한국주택금융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민병덕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341

발의연월일: 2024. 6. 11.

발 의 자:민병덕·김현정·김남근

정준호ㆍ이정문ㆍ김 윤

이수진 • 이강일 • 강준현

염태영 · 천준호 · 서영석

이용우 의원(13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고금리 상황이 지속됨에 따라 가계를 비롯한 금융소비자의 부 담이 커지고 있는 반면 은행권은 이자수익이 크게 증가하였음.

은행권은 이자수익 외에도 중도상환수수료를 연간 약 3천억원 부과하고 있고, 금융위원회는 2024년 3월 '은행별로 해당 수수료 부과 기준이 다르거나, 불합리한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고 밝혔음.

한편, 한국주택금융공사의 보금자리론 중도상환수수료는 2020년 172 억원(30,496명, 평균 56만원), 2021년 191억원, 2022년 66억원에 이르 며, 적격대출 역시 중도상환수수료를 부과하고 있음.

이에 정책모기지의 중도상환수수료를 선제적 폐지하여, 시중은행의 동참을 유도하고, 궁극적으로 시중은행의 비합리적 중도상환수수료 문 제를 해결하고자 함. 가계대출의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주택담보대출 및 전세자금대출 등은 대부분 정책금융의 지원이나 보증을 받는 구조 로 설계되어 있는 만큼 가계 대출 부담 완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함 (안 제43조의12 신설).

법률 제 호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3조의6제3항 중 "제43조의13"을 "제43조의14"로 한다.

제43조의12 및 제43조의13을 각각 제43조의13 및 제43조의14로 하고, 제43조의1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3조의12(중도상환수수료의 특례) 공사는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중도상환수수료를 부과할 수 없 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3조의6(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	제43조의6(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
을 받은 자의 보호) ①·② (생	을 받은 자의 보호) ①·② (현
략)	행과 같음)
③ <u>제43조의13</u> 제1항에 따라 지	③ <u>제43조의14</u>
정된 주택연금전용계좌의 예금	
에 관한 채권은 압류할 수 없	
다.	
<u><신 설></u>	제43조의12(중도상환수수료의 특
	례) 공사는 「금융소비자 보호
	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에
	도 불구하고 중도상환수수료를
	부과할 수 없다.
제43조의12(신탁 설정에 대한 특	제43조의13(신탁 설정에 대한 특
례) (생 략)	례) (현행 제43조의12와 같음)
제43조의13(주택연금전용계좌)	제43조의14(주택연금전용계좌)
(생 략)	(현행 제43조의13과 같음)